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완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033호)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152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258호)
- 이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501호)

2022.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박완수의원 대표발의(2115033)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한 준용규정 정정(안 제29조제2항)	3
II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115152)	7
1. 제안경위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
3. 검토의견	9
가.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한 준용규정 정정(안 제29조제2항)	9
III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2115258)	13
1. 제안경위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
3. 검토의견	14
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안 별표 제2호(94) 신설]	14

IV. 이병훈의원 대표발의(2115501)	20
1. 제안경위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
3. 검토의견	21
가. 융합문화복지도시개발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안 별표 제2호(94) 신설]	21
※ 참고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유형	29

I. 박완수의원 대표발의(2115033)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완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2. 03. 31.

다. 회 부 일 : 2022. 04. 0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결 절차와 관련된 조문인 토지보상법 제28조제2항(수수료),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4조(재결), 제35조(재결기간), 제52조제7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53조제4항(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제5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가 준용됨.

그러나 2012. 6. 1.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제53조제4항은 위원회의 소집과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5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관

한 내용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토지보상법 제53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의결에 관한 사항인 제53조제5항이 준용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적 오류를 개선해 법적 혼선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3. 검토의견

가.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한 준용규정 정정(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생략)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② ----- ----- ----- 제53조제5항-----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성립된 협의의 확인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제29조제1항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열람, 보상액 산정 및 협의 절차²⁾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³⁾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2조(심리)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생략)

제5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 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그런데 현행 준용대상 규정 중 제53조제4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소집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의 성립의 확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는 종전 제5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내용이 2012년 6월 동법 개정에 따라 제53조제5항으로 이동한 것이 제29조제2항의 준용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법률 제1101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일부개정)	법률 제1146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2. 6. 1. 일부개정)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 원장이 소집하며, <u>위원장을 포함한 위 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신 설></u> <u>⑤</u> (생략)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 ----- <u>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마다 지정하는 위원 8인으로 구성한 다.</u> <u>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 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⑥</u> (생략)

따라서 이러한 입법 미비 사항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동일한 입법취지 및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152)의 경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입법미비를 조속히 개선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두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의하는 경우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Ⅱ.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115152)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2. 04. 07.

다. 회 부 일 : 2022. 04. 0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해서는 현행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결 절차와 관련된 조문인 제28조제2항(수수료), 제31조(열람), 제32
조(심리), 제34조(재결), 제35조(재결기간), 제52조제7항(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53조제4항(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제57
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가 준용됨.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제52조제7항)은 의결
에 관한 내용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제53조제4항)
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임.

이는 2012년 6월 일부개정으로 종전 제53조제4항이 제53조제4항과

제5항으로 분리될 때에 제29조제2항에 명시된 “제53조제4항”이 “제53조제5항”으로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개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적 오류는 시급히 개정하여 법적 혼선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3. 검토의견

가.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한 준용규정 정정(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생략)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② ----- ----- ----- 제53조제5항-----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성립된 협의의 확인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제29조제1항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열람, 보상액 산정 및 협의 절차⁵⁾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략)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6)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2조(심리)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생략)

제5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 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그런데 현행 준용대상 규정 중 제53조제4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소집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의 성립의 확인과는 관계가 작은 것으로 보임.

이는 종전 제5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내용이 2012년 6월 동법 개정에 따라 제53조제5항으로 이동한 것이 제29조제2항의 준용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법률 제1101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일부개정)	법률 제1146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2. 6. 1. 일부개정)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 ③ (생략)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u>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⑥ (생략)

따라서 이러한 입법 미비 사항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한 날’로 하고 있는데, 동일한 입법 취지 및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033)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입법미비를 조속히 개선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두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의하는 경우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Ⅲ. 김성원의원 대표발의(2115258)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2. 04. 14.

다. 회 부 일 : 2022. 04.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능력 확보가 시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검토의견

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안 별표 제2호(94)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생 략)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 (93) (생 략) <u><신 설></u>	[별표]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 (93) (현행과 같음) (9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별표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제4조7)에서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

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은 같은 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⁸⁾.

현행 별표에서는 총 112개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⁹⁾이 의제¹⁰⁾되어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만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총 93개임.

사업인정이란 특정 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¹¹⁾하여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

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10)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개별법상 인·허가 등(지구·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등)이 있는 경우 이 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安葬)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립묘지시설사업¹²⁾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및 「토지보상법」 준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5257)¹³⁾의 의결을 전제로,

「국립묘지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같은 법 별표 제2호(94)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립묘지시설의 신속한 조성 및 확충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하는 공익성 검토기준은 ① 법령상 전제(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및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개별법에서 정한 수용재결의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시행자 의사와 능력(사업을 수행할 정당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③ 입법목적 부합성(법령목적, 상위계획·지침, 절차 등에 부합하였는지, 영입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지), ④ 공익 우월성(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지), ⑤ 사업계획의 합리성(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는지), ⑥ 수용 필요성(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수용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⑦ 공익 지속성(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 공익 관리가 가능한지) 등임.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3.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15257호)

제11조의11(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업이 실시되는 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시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①국립묘지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묘지)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현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 수용권 부여가 가능¹⁴⁾하고, ②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실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은 3~4개월 정도¹⁵⁾¹⁶⁾이며, ③「국립묘지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포괄적¹⁷⁾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럼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기 위한 것¹⁸⁾이므로 공공성이 크고, 사업의 신속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목적으로 보이는 점,

동 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시행주체가 국가보훈처장(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 국방부장관)¹⁹⁾이고, 사업인정이 의제되더라도 중앙토지수용

1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경우에 2022.6.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업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함.

15) 기준: 국립묘지사업(6개월) + 사업인정(5개월) = 11개월
사업인정의제시: 국립묘지사업(6개월) + 중도위협의(1~2개월) = 7~8개월

16)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인정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검토를 진행 중(사전 서류보완 등 추진)에 있다는 입장임.

17)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시설의 범위 중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 협의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²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립묘지법」에 사업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권 남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규정을 신설(안 제11조의11 신설)²¹⁾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처장(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의10까지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⑨ (생략)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15257호)

제11조의11(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업이 실시되는 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시계획의 사업시

률안」(김성원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바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IV. 이병훈의원 대표발의(2115501)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병훈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2. 05. 04.

다. 회 부 일 : 2022. 05.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별표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 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15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검토의견

가. 융합문화복지도시개발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안 별표 제2호(94)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생 략)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 (93) (생 략) <u><신 설></u>	[별표]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 (93) (현행과 같음) (94) 「<u>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에 따른 개발사업

개정안은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15504)이하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법안”)에 따른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사업²²⁾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94)에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제4조²³⁾에서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22)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법안」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1항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2조제6호에서는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사업”을 정의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조에서도 ‘조성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특별법안에서는 ‘개발사업’과 ‘조성사업’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다만,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개발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명시하고자 하므로 이하에서는 ‘개발사업’ 용어를 사용하되 특별법안의 ‘조성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함.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은 같은 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²⁴⁾.

현행 별표에서는 총 112개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²⁵⁾이 의제²⁶⁾되는 사업은 총 93개임.

-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6. (생략)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6)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개별법상 인·허가 등(지구·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등)이 있는 경우 이 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

사업인정이란 특정 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²⁷⁾하여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

개정안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하려는 ‘융합문화복지도시’²⁸⁾ 개발사업은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하는 공익성 검토기준은 ① 법령상 전제(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및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개별법에서 정한 수용재결의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시행자 의사와 능력(사업을 수행할 정당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③ 입법목적 부합성(법령목적, 상위계획·지침, 절차 등에 부합하였는지, 영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지), ④ 공익 우월성(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지), ⑤ 사업계획의 합리성(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는지), ⑥ 수용 필요성(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수용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⑦ 공익 지속성(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 공익 관리가 가능한지) 등임.

28)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제1550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문화생태회랑”이란 걷기·달리기·자전거 등 건강증진, 문화, 체육 관련 활동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숲길, 체육공원, 수변공원, 생활문화시설 등을 연결한 선형(線形)의 공원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과 지원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라. 학교·도서관·연구소·실험실(실습장을 포함한다) 등 학습과 교육·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마. 디자인·커뮤니케이션 매체·영상·정보기기·정보서비스 등 지식과 문화를 교류하거나 전달·저장·융합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바.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으로 개발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 그 밖에 건강증진을 위하여 종묘 또는 약초재배, 식품 가공, 농업 기자재 생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산림휴양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2조의3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길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 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 라. 시민의 휴양 및 방역을 위한 도시림, 수변 숲과 그 이용을 위한 지원시설
4. “주거·후생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청장년층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중장기 임대주택
 -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갖춘 복합기능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²⁹⁾이 국민의 건강하고 품격있는 문화생활 영위,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토지보상법」 별표에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법」에 따른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바, 그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임대하는 주택(나목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인주택”이라 한다)과 영구임대주택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마. 그 밖에 주거·후생복지와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융합문화복지도시”란 건강문화생태회랑,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후생복지시설을 갖추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그 거주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기능의 도시를 말한다.

6.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사업”이란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8. (생략)

29)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제1550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화생산을 기반으로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후생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민족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을 촉진하여 문화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사업의 내용에는 수익사업에 이용되거나 이용대상이 입주자로 한정되는 시설 등의 조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토지등의 수용·사용 및 사업인정의제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토지등에 대한 수용·사용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 사업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정해져야 하고, 특히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만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용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법안」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국민생태회랑건강본부’는 법인으로서는 민간자본과의 공동출자 및 연대를 통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므로³⁰⁾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사업의 내용 중에는 수

30)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법안」

제43조(사업) ①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임대주택사업을 포함한다)
 3. 융합문화복지도시의 운영·관리
 4.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 사업
 5.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비축 사업
 6. 제52조에 따른 노후복지저축 및 시설관련 사업(납골 및 장묘사업을 포함한다)
 7. 융합문화복지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포함한다)
 8. 융합문화복지도시 및 건강문화생태회랑과 관련된 조사 및 교육·연구개발 사업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그 밖에 고령화대책과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사업
- ②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 분야별로 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민간자본과의 공동출자 및 연대를 할 수 있다.
- ③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익시설의 설치·운영이 포함될 수 있고,

동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일부 시설들의 이용대상이 입주자 등으로 한정될 경우에는 개방성 및 대중성을 갖춘 공익 목적의 시설로 인정되기 곤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따라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수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처럼 사업목적의 공공성이 약한 일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수용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셋째,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사업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보면,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사업은 건강문화생태회랑(공원),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 등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현행법 제4조제3호 및 제5호³¹⁾에 따라 상당

부분 사업인정이 가능함.

또한, 국민생태회랑건강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도 현행 별표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³²⁾,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³³⁾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인정이 의제되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³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인정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33)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을 받을 수 있는바, 이처럼 현행법에 따라서도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 사업 시행 및 토지등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1

-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각 목 생략)

참고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유형

자료: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 절차를 통해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용권 부여

*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토지보상법 제20조)

구분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개별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1호 사업인정사업(19개)	제2호 사업인정의제사업 ³⁵⁾ (93개)
대상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사업 - 국방·군사, 철도·도로 등 공공사업, 청사·공장 등 공공용 시설사업, 주택 및 택지·산단 조성사업 등 <u>사업유형 열거</u> <사례> (1호) 국방대 이전 (2호) 비관리청도로공사 (3호) 공장, 정원, 갯벌, 지역특구 (4호) 우제류복원센터연구소 (5호) 행복주택 등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사업 - 토지보상법 개정('15.12월)을 통하여 <u>개별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 가능 사업을 토지보상법 별표에 열거</u> <사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응급조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사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인정권자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승인권자 (해당 기관장, 시·도지사 등)
인정절차	사업인정 신청(사업시행자) → 공익사업 대상여부 검토(국토부)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사업인정 신청(사업시행자)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의견청취(사업시행자) → 중토위 협의(인·허가·승인권자) →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인·허가·승인권자)
개정연혁	수목원 추가('05년),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08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14년)	별표 신설('15.12월) 이후 삭제 3개, 신설 4개 → (삭제) 세계산수관대법, 문경세계자연유산법, 신공항건설촉진법 → (신설) 해양클러스터법, 도시재생법, 빈집법, 수자원조사법 ※ 법 제4조의2제3항 신설로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해 5년마다 재검토 후 폐지·변경 또는 유지 조치 필요('21.10월)	
대상사업 추가요건	-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법령내용(사업내용 구체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공필요 사업에 한해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 민간사업자의 수용요건 강화 등)
특징	①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 부족시 사업인정 거부(국토부장관) ② 사업인정기간 6개월 소요	① 토지보상법 별표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수용의 필요성 부족시 사업인정 거부(국토부장관) ② 사업인정기간 6개월 소요	①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승인만으로 토지 수용 가능(사업인정 거부 없이 수용권 남발 가능성 존재) ② 사업인정기간 단축(6개월→1개월)

35) 사업인정의제사업 : 개별법에서 인·허가·승인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봄(의제처리)